C - 18 - 2015

- (다) "발주자"라 함은 (가) "건설공사"에서 정의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.
- (라) "설계자"라 함은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」제2조2호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,「건축사법」제23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및「기술사법」제6조에 따라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.
- (마) "건설사업관리자(CMr; Construction Manager)"라 함은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2조제8호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·타당성조사·분석·설계·조달·계약·시공관리·감리·평가·사후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- (바) "시공자"라 함은 (가) "건설공사"에서 정의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- (사) "감리자"라 함은 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2조제5호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, 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자(건축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수행자 포함)를 말한다.
- (아) "유해·위험 요인"이라 함은 건설공사 수행 중 근로자의 안전·보건을 저해할 수 있는 물질, 환경, 작업방법 등의 잠재요소를 말한다.
- (자) "설계도서"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관계자가 사용하는 설계도, 내역서(일위대가 포함), 수량산출서, 시방서, 구조계산서 등을 말한다.
- (차) "물질안전보건자료"라 함은 화학물질의 명칭·성분 및 함유량, 안전·보건 상의 취급주의사항,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작성하여 화학물질을 취급 하는 자에게 당해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 를 말하며, MSDS(Material Safety Data Sheet)라고도 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, 관련 고시, KOSHA GUIDE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